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에
필요한 사항 규정 〉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57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관 현 준

목 차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2200157)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1
Ⅲ. 주요내용	2
Ⅳ. 검토의견	4
1. 총괄 검토	4
가. 입법배경	4
1) 수원 군 공항 일반 현황	4
2)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절차	5
3) 추진현황	8
나. 제정안의 구성 체계	13
다. 총괄 검토의견	15
라. 관계 기관 의견	23
2. 조문별 검토	25
가. 목적 및 정의(안 제2조)	25
나. 기본방향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36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다른 계획과의 관계(안 제5조 및 제6조)	40
라.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의 시행 등(안 제7조)	47
마.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등(안 제8조)	56

바.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및 인가·허가 등의 의제(안 제9조 및 제10조)	62
사.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안 제12조 및 제13조)	78
아. 통합국제공항건설추진단 및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안 제12조 및 제13조)	81
자. 정부의 재정 지원(안 제14조)	85
차. 부담금의 감면 등(안 제15조)	88
카. 민간자본 유치 등(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93
타. 특례(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100
파. 보칙(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108
하. 별칙(안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117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2200157)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6. 5.

다. 회 부 일 : 2024. 6. 11.

II. 제안이유

수원시와 화성시의 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하여 소음발생, 고도제한 등 주변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받고 있고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잠재력이 높은 도심 내 국토 활용의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어 수원 군 공항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경기 남부권의 경우 반도체·소재·바이오 의학 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항공 물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남부권 내 민간공항이 부재하여 기업의 수출 활동과 지역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국가적으로 수도권 여객 수요의 증가에 따른 공항 포화가 예상되고 있어 근미래의 여객 수요 대응도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군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신설을 포함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개발절차, 지원사업, 특별

구역 지정,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성장거점을 조성함으로써 경기도를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항공교통 발전기반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은 군 공항의 이전과 민간공항의 신설을 포함한 여객·물류 중심 복합공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함(안 제3조).

다. 이 법은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라.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의 시행, 이전주변지역 특별구역 지정,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통합국제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국가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2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입법배경

1) 수원 군 공항 일반 현황

위 치 도		수원 군 공항	
	●면적	5.22km ² (약 248만 평) ¹⁾	
	●사용부대	제10전투비행단 (KF-5E/F, F-4E)	
	●활주로	주) 2,744m×45m 보조) 2,744m×45m 비상) 2,438m×34m	

자료 : 국방부

수원 군 공항은 현재 경기도 수원시 세류역 인근 도시에 위치(5.2 km²)하고 있으며, 탄약고 부지는 화성시에 위치(1.1km²)하고 있음에 따라 수원시와 화성시에 걸쳐 위치하고 있음.

현재 수원 군 공항에 주둔하고 있는 제10전투비행단은 1951년 사천

1) 국방부는 화성시에 위치한 탄약고 부지(1.1km²)를 제외한 면적을 기재한 것으로 보임.

에서 제10전투비행대로 창설되어 강릉기지로 이동하였으며, 1954년 10월 미군으로부터 수원 군 공항의 관할권을 이양받음에 따라 1957년 10월 수원기지로 이동한 이후 지금까지 주둔하고 있음.

2)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절차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범위는 ①군 공항 이전사업, ②민간공항 건설사업으로 나눌 수 있음.

①군 공항 이전사업은 현행 법령에 따르는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 제9조제1항,²⁾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제55조(양여)³⁾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⁴⁾에 따라 종전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2)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①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제55조(양여)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3)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으로 기부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제55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한 재산이 10년 내에 양여목적과 달리 사용된 때에는 그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면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일반재산을 제1항제3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① 제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하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건설하여 기부하고, 국방부가 사업시행자에게 용도폐지된 종전 군 공항 부지 등 재산을 양여하여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루어짐.

「군공항이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절차를 살펴보면, 종전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군 공항 이전건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고(제4조), 예비이전후보지 중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제5조 및 제6조).

이전후보지가 선정되면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고(제7조),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면 국방부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하게 되며(제8조), 이전부지 선정 이후에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전사업을 시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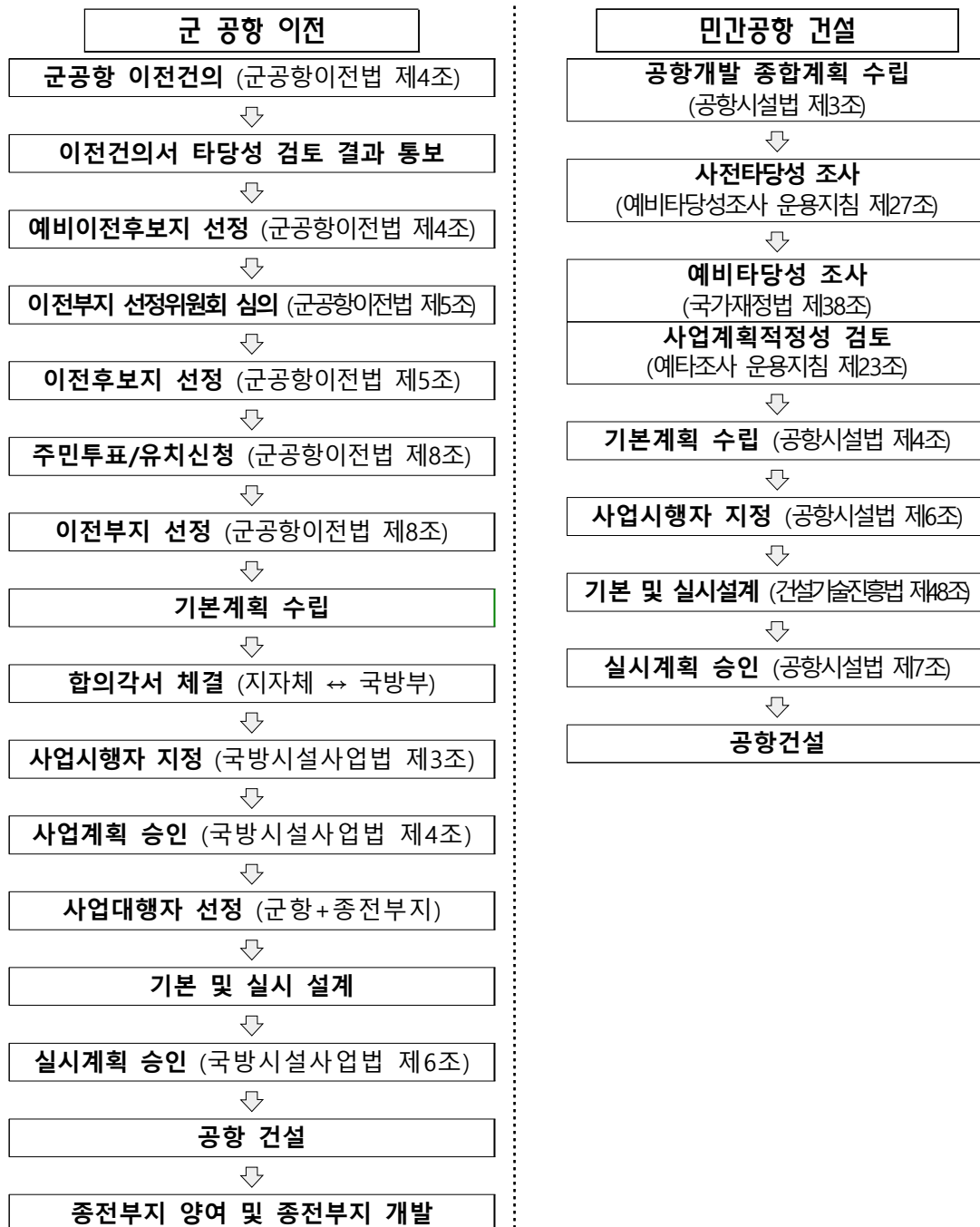
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국방·군사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유지 또는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승인받은 해당 국방·군사시설사업 계획 및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과 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민간공항 건설사업은 현행 법령에 따르는 경우 「공항시설법」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종합계획 수립 - 사전타당성 조사 - 예비타당성 조사 - 기본계획 수립 - 사업시행자 지정 - 기본·실시 설계 - 실시계획 승인 - 건설’ 등의 단계를 거쳐 공항 건설을 추진함.

【 군 공항 이전 및 민간공항 건설 절차 】



3) 추진현황

지난 2014년 3월 수원시는 2013년 제정·시행된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수원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2015년 6월 국방부는 이전 건의 타당성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을 승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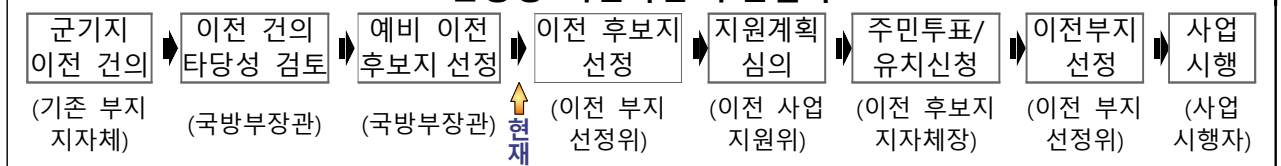
참고로, 수원시는 지난 2014년 11월 수원시 군 공항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시민협의체의 지원을 위하여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였음.

이후 2017년 2월 국방부는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부지(약 14.54km² 규모)를 수원 군 공항 단독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하였음.

【 수원 군 공항 이전 추진 현황 】

- 수원 군 공항 이전 건의서 제출('14.3, 수원시→국방부) ⇨ 이전 건의 타당성 승인('15.6, 국방부) ⇨ 예비이전후보지(화성시 화옹지구 일원) 선정('17.2, 국방부)

<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절차 >



【 예비이전후보지(화성시 화옹지구) 위치도 】



자료 : 국토교통부

그러나 화성시는 2017년 10월 ‘화성시 군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군 공항 이전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수원 군 공항 이전은 2024년 8월 현재까지 「군공항이전법」에 따른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2021년 제6차 공항개발 중합계획(2021~2025)에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등 지자체 제안은 지자체간 협의 상황 등 제반 추진여건을 종합고려 후 추가검토”가 명시되었음. 그리고 국토교통부 2023년 예산안에 공항개발조사(3532-309)사업 내 경기남부 국제공항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한 예산 2억원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원 군기지 이전문제, 지자체 간 갈등 등으로 공항입지가 사전 결정되지 않아 추진 곤란함을 이유로 불용되었고, 2024년 예산안에 다시 반영되었음.

【 공항개발조사(3532-309) 사업 2023·24년도 예산 산출내역 】

'23년 예산		'24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400 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1,800백만원	195,662 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1,350백만원
	가. ICAO 장애물 제한표면 개정 국내 적용방안 연구(700백만원) · 연구용역 1식 x 700백만원		가. ICAO 장애물 제한표면 개정 국내 적용방안 연구(400백만원) · 연구용역 1식 x 400백만원
	나. 공항개발 종합계획 운영 합리화 방안 연구(150백만원) · 연구용역 1식 x 150백만원		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500백만원) · 연구용역 1식 x 500백만원
	다. 공항 해외수출 로드맵 마련 방안 연구(150백만원) · 연구용역 1식 x 150백만원		다. 공항 해외수출 로드맵 마련 방안 연구(250백만원) · 연구용역 1식 x 150백만원
	라.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300백만원) · 연구용역 1식 x 300백만원		라.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조사(200백만원) · 연구용역 1식 x 200백만원
	마. 양양공항 시설개선 사전타당성 조사용역(300백만원) · 연구용역 1식 x 300백만원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4,250백만원
	바. 경기남부 국제공항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200백만원) · 연구용역 1식 x 200백만원		가. 대구 민간공항 이전,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서산 군비행장 민항 시설 설치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수행 관련 2차년도분 예산 편성(4,250백만원) · 기본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4,250백만원 x 1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4,250백만원		

'23년 예산		'24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가. 대구 민간공항 이전, 백령도 소형 공항 건설,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 설 설치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수행 관련 1차년도분 예산 편성(4,250 백만원) • 기본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 평가 용역 : 4,250백만원 x 1식		식

자료 : 국토교통부

또한, 경기도는 2023년 7월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
례’를 제정하였으나, ‘경기도 국제공항’의 정의에 군 공항은 제외함을 명
시하였으며,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 복수의 후보지 선정, 시설규모
및 사업비 등을 검토하는 국제공항 유치를 위한 용역⁵⁾을 발주하였음.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기도 국제공항”이란 경기도가 관할 행정구역에
유치하려는 공항을 말한다. 이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공항은 제외한다.

5)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 사업시행자 : 아주대
- 용역 기간 : 2023.9. ~ 2024. 8.(11개월)
- 주요 내용 :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 항공수요 등 여건 분석, 공역권, 환경훼손 최소화, 주변 교통
인프라, 산업 등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복수(複數) 후보지 제시, 후보지별 관광,
물류, 산업 등과 연계한 환경친화적인 배후지 개발계획 등

【 수원 군 공항 관련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

경기도	·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23.7.18) - (목적) 국제공항 경기도 유치 및 건설 촉진 - (내용) 지원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설치
수원시	·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14.11.17) - (목적) 수원화성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 설치 및 시민협의체*의 지원 * (구성) 이전부지 및 종전부지 지역주민, 시의원 등
화성시	· 화성시 군 공항 이전 대응 조례('17.10.16) - (목적) 군 공항의 화성시 이전 저지와 대응을 위한 시민운동 지원 - (정의) “범시민운동”: 자발적 군공항 이전반대 운동

자료: 국토교통부

【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 현황 】

- 2014년 수원시, 수원 군공항 이전 건의
- 2017년 국방부,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부지(약 1,454만㎡ 규모)를 수원 군공항 단독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 2017년 화성시, ‘화성시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 제정 등 군 공항 이전 반대 입장
- 2021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 :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은 지자체간 협의 상황 등 제반 추진여건을 종합고려 후 추가검토
- 2023년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 제정 : 민간공항 건설 입장(경기도 국제공항의 정의에 군공항 제외)
- 2023년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위한 국토교통부 예산 2억원
- 2023년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를 위한 용역 발주 (7월 19일)
 -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 복수의 후보지 선정, 시설규모 및 사업비 등 검토
 - 예산 : 2.5억원, 기간 : 11개월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내용 미포함)
- 2024년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위한 국토교통부 예산 2억원 재반영

나. 제정안의 구성 체계

제정안은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제명으로 본칙 5개의 장 33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 분	조 문	규 정 사 항
본 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방향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2장 통합국제공항 건설 및 지원 등	
	제7조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의 시행 등
	제8조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등
	제9조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제10조	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11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등
	제12조	통합국제공항건설추진단
	제13조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
	제3장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위한 지원	
	제14조	정부의 재정 지원
	제15조	부담금의 감면 등
	제16조	민간자본 유치
	제17조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제18조	지역기업의 우대
	제19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구 분	조 문	규 정 사 항
	제20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21조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제22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제4장 보칙	
	제23조	권한의 위임
	제24조	보고·검사 등
	제25조	시정명령 등
	제26조	허가 등의 취소
	제27조	과징금의 부과
	제28조	청문
	제5장 벌칙	
	제29조	명령 등의 위반 죄
	제30조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31조	업무방해 죄
	제32조	제지·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33조	양벌규정
부 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다. 총괄 검토의견

본 제정안은 수원시·화성시에 위치한 군 공항을 이전하고, 군 공항이 이전되는 부지에 활주로를 공유하는 민간 국제공항을 신설하며, 군 공항이 이전한 이후 종전 군 공항 부지에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따라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① 군 공항 이전 관련

한 기사에 따르면 수원 군 공항은 도심 속에 위치함에 따라 2022년 12월 기준 소음피해로 인한 누적 소송 배상액이 2,246억원에 이르는 등⁶⁾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고,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주변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되는 측면이 있으며, 수도권 유입 인구의 증가로 미래에는 비용 부담 및 생활권 침해가 더욱 심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문제제기로 인하여 지난 2014년 3월 수원시는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 이전을 건의하였고, 2017년 2월 소음피해 인구수와 소음보상 및 소음대책사업 등에 따른 비용의 감소 등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 적합성⁷⁾을 충족하는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부

6) 인천일보, “수원·화성 군공항 소음 피해, 사회적 비용 3000여억”, 2023.10.3.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4095>

7) 군 공항을 이전하기 전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항공작전운용이 가능할 것, 전방위 항공작전 수행이 가능하며 균형적인 전력 배치가 가능할 것 등 군사작전 적합성과 소음피해 인구수와 소음보상 및 소음대책사업

지가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되었음.

그러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예비이전후보지 소재 지방자치단체인 화성시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후속 절차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제정안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른 후속절차가 중단된 군 공항 이전의 추진을 도모하여 도심 내 위치한 군 공항을 이전함으로써 소음 피해, 고도제한 등 인한 군 공항 주변 지역 주민의 생활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한편, 수원 군 공항 부지는 도심 내에 위치함에 따라 경제적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난 2015년 3월 국방부는 수원시의 이전 건의서 제출 이후 사업비를 약 7조원으로 추정하였음.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사업방식은 기부 대 양여 방식⁸⁾으로 이루어지는바 그 원칙상

등에 따른 비용이 감소될 수 있을 것, 시공성·토공량(土工量) 등을 고려하여 지형이 공항입지로 적합할 것 등 공항입지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참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①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제55조(양여)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기획재정부훈령]

제4조(사업대상) ① 양여재산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해당되는 재산일 경우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여재산은 최초 합의각서 체결 시점에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이어야 한다. 다만, 대체시설 완공후 최종 합의각서 체결시 양여재산이 기부재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령」에 따라 사업시행

기부 재산(군 공항 대체시설)의 가치와 양여 재산(종전 군 공항 부지)의 가치가 동등한 수준이어야 하므로 수원 군 공항 부지의 가치를 같은 금액인 약 7조원으로 추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국방부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사업비를 2016년 6월 5.7조원으로 추정하였으나, 2023년 8월 대구 군 공항 이전 관련 약 11.5조원의 사업비를 최종사업비로 확정하였음을 고려할 때 수원 군 공항 부지의 가치 역시 지난 2015년 3월에 추정한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즉, 동 제정안은 도심에 위치한 군 공항을 이전하여 주민 피해 및 보상을 위한 국가 재정 부담 문제를 해소하는 데 더하여 경제적 잠재력이 높은 도심 내 종전 군 공항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음.

다만, 동 제정안은 군 공항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이 설치될 지역, 즉 이전부지를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라고 정의⁹⁾하고 있는데, 제정안 제5조제2항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공항이전법」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이

자는 사업주관기관에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즉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9)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이전부지”란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를 말한다.

전부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그동안의 수원 군 공항 이전 추진경과를 살펴볼 때 지난 2017년 2월 국방부는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부지를 수원 군 공항 단독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2024년 8월 현재까지 「군공항이전법」에 따른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처럼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제정 이후에도 동 제정안의 목적인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항공교통 발전기반 조성,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달성이 요원¹⁰⁾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정 이전 또는 제정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및 이견 조정 등을 통해 이전부지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회법」 제58조제6항¹¹⁾은 제정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0) 동 제정안과 같이 “이전부지”를 특정하지 않은 선례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23년 4월 제정되어 8월 시행되었으나, 2024년 8월 현재까지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못하여 광주 군 공항 이전절차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이전부지”란 광주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를 말한다.

11)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⑥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민간 국제공항 신설 및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관련

수원시에서 지난 2021년과 2022년 발주한 두 차례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기남부에 연간 여객 870만명 이상, 화물 12만톤 이상의 항공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 군 공항 이전과 함께 민·군 통합 건설 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측되었음.

【 경기남부 국제공항 설립 시 경제적 타당성 】

용역명	경기남부 국제공항 항공수요 분석용역	경기남부 민간공항 개발계획 수립용역
항공수요 예측 (여객·화물/연)	874만명·121천톤/연	951만명·131천톤/연
민간공항 추가 사업비	3,515억원	4,151억원
사업성(B/C)	2.043	2.002 ※ 민간공항 독립 신설시 B/C 0.945
기간	2021. 4.~10.	2022. 3.~9.

※ 자료 : ‘경기남부 국제공항 항공수요 분석용역 보고서’(2021.10.) 및 ‘경기남부 민간공항 개발계획 수립용역 보고서’(2022.09.)’ 재구성

그리고 동 제정안이 의결을 전제로 하는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00158호, 동 의원 대표발의)에 따라 종전 군 공항 부지에 첨단연구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해당 첨단연구산업단지에서 생산된 반도체·약품 등 제품들의 운송에 경기남부에 신설되는 공항이 이용될 수 있어 항공수요 및 경제적 타당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제정안은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더하여 민간 국제공항 신설을 함께 추진하고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임.

제정안의 체계는 대체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유사하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장(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부지 개발과 관련한 사항은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별도의 제정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즉 동 제정안은 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001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그 논의와 연계될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로,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00158호)은 수원시 및 화성시의 군 공항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 및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구로 국무총리 소속 첨단연구산업단지 지원처를 설치하고,

첨단연구산업단지 지정 심의, 기본계획 수립, 의견 조정 등을 위하여 첨단연구산업단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처장이 관계 부처 협의 및 첨단연구산업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첨단연구산업을 지정하면 그 기본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임.

또한,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육성 사업 등에 대한 예타 신속 추진 및 면제를 규정하고, 기반 시설·개발인프라 조성비용의 우선 지원 등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국·공유재산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음.

【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주요내용 】

목적 (안 제1조)	○ 경기도 수원시 및 화성시의 군 공항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조성 및 육성을 통해 국내·외 우수 기업·인재를 유치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미래성장 동력 확보, 국민경제에 이바지
지원기구 (안 제14조 및 제15조)	○ 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 :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구로, 관계자 의견의 원활한 조율 및 추진력 확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 첨단연구산업단지위원회 : 첨단연구산업단지 지정 심의, 기본계획 수립 심의, 의견 조정 등 수행.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경기도지사·수원시장·화성시장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 참여

절차 (안 제6조 및 제8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첨단연구산업 지정 : 지원처장이 관계 부처 협의 및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 ○ 첨단연구산업단지 지정 : 종전부지·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수원시장·화성시장이 지정 신청 → 지원처장이 위원회 심의·의결 및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 ○ 개발 : 지원처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성·개발, 국가·관할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민간투자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지원방안 (안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육성 사업 등에 대한 예타 신속 추진, 면제 인정 ○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기반시설·개발인프라 조성 비용의 우선 지원 등), 조세·부담금·사용료 등의 감면 ○ 국·공유재산의 조성원가 이하 공급 가능 ○ 주거여건 개선 : 외국교육기관·외국의료기관 설립, 주민편익시설 설치 지원 ○ 출입국 시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등 특례 ○ 건폐율·용적율 상향, 수도권 공장 증설 제한 등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라. 관계 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공항 신설 여부는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계획 부합 여부, 국내 공항간 위계 및 기능,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신규 공항건설 여부를 입법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기존 공항개발 절차와 국가계획에도 배치되며 체계적인 공항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한편, 제정안에서 민간공항 건설은 군 공항 이전에 수반되는 형태로 제시된만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지자체 간 협의 등 논의 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수원 군 공항의 입지로 지역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 공항 이슈를 먼저 정리한 후 민간공항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수도권 공역(空域)은 현재도 혼잡한 상황인바, 수도권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주변 공항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인천, 김포, 청주 등 공항에 직접적인 수요 잠식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됨.

2) 국방부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현행 「군공

항이전법』상 이전절차 및 기부대양여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화성시는 이전건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화성시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로 특정하여 자치권 침해 또는 지역 간 갈등 심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임.

3) 기획재정부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범위에 철도, 도로 등 공항 연계 기반시설을 포함하는 것은 기부대양여의 원칙과 상충하며, 국가 재정 지원을 전제로 하는 것은 수용 곤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조항도 삭제할 필요가 있음.

4) 화성시

이해당사자인 화성시와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동의 과정, 의견제시 절차가 미흡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자치권과 주민참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화성시-수원시 간 첨예한 의견대립이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국회의 특별법 입법으로 수원 군 공항 이전부지를 결정하고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강제하는 것은 특별법 만능주의로 보임.

2. 조문별 검토

가. 목적 및 정의(안 제2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항공교통 발전기반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이하 “통합국제공항”이라 한다)이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원 군 공항(이하 “군 공항”이라 한다)을 이전하여 군 공항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공항이 함께 건설되는 공항을 말한다. 2.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이란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군 공항 이전사업”이라 한다)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나. 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등 기반시설의 건설, 공항이용객 및 항공관련업무 종사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항공화물유통시설·정보통신시설 등 공항의 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조성 다.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와 통합국제공항 건설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주거시설과 이에 수반한 생활 편의시설 등의 조성 3. “종전부지”란 군 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한다. 4. “이전부지”란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경기도 화성시 일원의 부지로서 국방부장관이 고시한 부지를 말한다. 5. “이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이란 이전부지가 소재한 경기도 화성시 및 이와 연접한 소음피해지역 시·군·구 중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6.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 정 안
7. “중전부지 개발사업”이란 중전부지를 활용하여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첨단연구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중전부지 지방자치단체”란 군 공항이 위치한 경기도 수원시와 경기도 화성시를 말한다.

안 제1조는 목적 규정으로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의 효율적 추진, 항공교통 발전기반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제정법률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의 기본방향, 사업의 시행자,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인·허가 의제 및 이를 지원하는 추진단, 재정지원,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목적규정에서 이러한 제정안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음.

참고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중전부지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중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도 그 목적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으나, 본 제정안의 경우 중전부지 개발에 대하여는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름을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목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국토균형

발전을 그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본 제정안은 항공 교통 발전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차이가 있음.

< 제정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조문 비교(목적) >

제정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u>항공 교통 발전기반 조성</u> 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u>중전부지 개발</u>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u>중전부지 개발</u>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u>국토균형발전</u> 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화성시는 제정안의 목적과 관련하여 신규공항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수원 군 공항의 이전을 위한 수단으로 민간공항 개발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임.

참고로, 충청남도는 경기남부지역은 2028년 개항 예정인 서산공항의 항공수요 세력권을 제외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음으로 안 제2조는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등 8개 용어(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중전부지, 이전부지, 이전부지 주변지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중전부지 개발사업, 중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특히, 안 제2조제4호는 이전부지를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라고 정의¹²⁾하고 있는바,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이전부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지난 2017년 국방부가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부지를 수원 군 공항 단독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2024년 8월 현재까지 「군공항이전법」에 따른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처럼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동 제정안의 목적인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항공 교통 발전기반 조성,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달성이 어려울 것¹³⁾으로 보이는바, 제정 이전 또는 제정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및 이견 조정 등을 통해 이전부지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회법」 제58조제6항¹⁴⁾은 제정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12)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이전부지”란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를 말한다.

13) 동 제정안과 같이 “이전부지”를 특정하지 않은 선례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23년 4월 제정되어 8월 시행되었으나, 2024년 8월 현재까지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못하여 광주 군 공항 이전절차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이전부지”란 광주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를 말한다.

14)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⑥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를 살펴보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이전부지를 직접 정의하지 않았으나 “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을 정의하면서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및 경상북도 의성군 지역으로 정의하여 이전부지를 간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다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 및 경상북도 의성군 지역이 이전부지로 선정된 이후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상황과 차이가 있음. 즉, 이전부지가 행정적으로 결정된 이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입법이 이루어진 것임.

한편,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이전부지를 광주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라고 정의¹⁵⁾하여 특정 지역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광주 군 공항의 경우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상황과 다름.

이와 관련하여 화성시는 수원 군 공항 이전은 지자체 간 참여한 의견

15)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이전부지”란 광주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를 말한다.

대립 중으로, 이해당사자인 화성시와의 협의나 동의 없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자치권 및 주민참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심의 과정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수렴 및 이견이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이전부지 주변지역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및 경상북도 의성군 지역으로 특정한 것과 달리 안 제2조제5호는 이전부지가 소재한 경기도 화성시 및 이와 연접한 소음피해지역 시·군·구 중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군공항이전법」 제2조제5호¹⁶⁾의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정의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한편, 수원시는 이전주변 지역지원사업의 시행주체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즉 화성시장 및 수원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 제2조제6호와 관련하여, 「군공항이전법」에서와 같이 이전건의서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즉 수원시장이 시행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6)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이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이란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이와 연접한 소음피해지역 시·군·구 중 제20조의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또한, 안 제2조제7호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동 제정안이 의결을 전제로 하는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첨단연구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관광·상업 시설을 설치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차이가 있는데, 이는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종전부지 개발계획은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며 종전부지 가치의 극대화를 위하여는 관광, 상업 시설의 설치 등 다양한 종류의 개발계획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례¹⁷⁾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사례를 참고하여, 첨단연구산업단지를 포함하면서도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종류를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마지막으로 안 제2조제8호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를 경기도 수원시와 경기도 화성시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수원 군 공항이

17)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종전부지 개발사업”이란 종전부지를 활용하여 관광·상업 시설을 설치하고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경기도 수원시(5.2km²)와 화성시(탄약고 부지 1.1km²)에 걸쳐있음에 따른 것으로 보임.

다만, 국방부는 이에 대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이전 절차는 종전부지 지자체장의 이전건의서 제출로 시작되며, 이전건의서를 제출한 종전부지 지자체장은 재원조달계획, 지원방안, 지원계획 등을 수립할 의무와 이전·지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미 국방부에 이전건의서를 제출한 수원시와 달리 화성시는 아직 이전건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화성시를 종전부지 지자체로 특정하고 있어 화성시는 군 공항 이전법령 상의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권 침해 소지 및 지역 간 갈등 심화 등의 우려가 있으며, 만약 화성시가 종전부지 지자체로서의 역할을 거부하게 된다면 향후 이전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임.

반면, 종전부지 지자체를 수원시로 한정하는 경우, 탄약고가 위치한 종전부지인 화성시가 배제되는 측면이 있음. 그리고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화성시장은 첨단연구산업단지 지정 신청 주체¹⁸⁾이자 첨단연구산업단지위원회의 위원¹⁹⁾으로서 첨단연

18)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00158호,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제8조(첨단연구산업단지의 지정) ① 지원처장은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수원시장 및 화성시장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첨단연구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

구산업단지 조성의 주체이므로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조문 비교(정의) >

제정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이하 “통합국제공항”이라 한다)이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원 군 공항(이하 “군 공항”이라 한다)을 이전하여 군 공항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공항이 함께 건설되는 공항을 말한다. 2.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이란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군 공항 이전사업”이라 한다)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통합신공항”이라 한다)이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구 군 공항(이하 “군 공항”이라 한다)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정·고시된 대구국제공항을 이전하여 건설되는 공항을 말한다. 2.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란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군 공항 이전사업”이라 한다)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19)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00158호,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제15조(첨단연구산업단지위원회) ① 첨단연구산업의 육성 및 보호,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개발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첨단연구산업단지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첨단연구산업의 육성·보호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조성·지정·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첨단연구산업의 육성 및 보호,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개발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5. 화성시장

제정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나. 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 교통수단 등 기반시설의 건설, 공항 이용객 및 항공관련업무 종사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항공화물유통시설·정보통신시설 등 공항의 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조성 다.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와 통합 국제공항 건설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주거시설과 이에 수반한 생활 편의시설 등의 조성 3. “중전부지”란 군 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한다. 4. “이전부지”란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경기도 화성시 일원의 부지로서 국방부장관이 고시한 부지를 말한다. 5. “이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이전 주변지역”이라 한다)이란 이전부지가 소재한 경기도 화성시 및 이와 연결한 소음피해지역 시·군·구 중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6.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중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중전부지 개발사업”이란 중전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나. 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 교통수단 등 기반시설의 건설, 공항 이용객 및 항공관련업무 종사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항공화물유통시설·정보통신시설 등 공항의 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조성 다.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와 통합 신공항 건설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주거시설과 이에 수반한 생활 편의시설 등의 조성 3. “중전부지”란 군 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한다. 4. “중전부지 주변지역”이란 중전부지와 맞닿은 지역으로서 중전부지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5. “중전부지 개발사업”이란 중전부지를 활용하여 관광·상업 시설을 설치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중전부지 지방자치단체”란 군 공항 및 대구국제공항이 위치한 대구광역시를 말한다. 7. “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이란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및 경상북도 의성군 지역을 말한다.

제정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u>부지를 활용하여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첨단연구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u> <u>8. “중전부지 지방자치단체”란 군공항이 위치한 경기도 수원시와 경기도 화성시를 말한다.</u>	8.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중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기본방향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제 정 안
제3조(기본방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를 개발하여야 한다. 1. 군 공항의 이전과 민간공항의 신설을 포함한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 2. 활주로 관리 및 항공기 운항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공항의 신속한 건설 3. 종전부지 개발을 통한 첨단연구산업의 기능이 활성화된 도시 조성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3조는 국가가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을 조성해야 할 방향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i)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공항, ii) 안전이 확보된 공항의 신속한 건설, iii) 첨단연구산업의 기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종전부지 개발임.

기본방향 규정은 기본이념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는 법률에서 제시하며, 목적규정에서 표현하지 못한 법률의 제정이념이나 정책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기본방향 규정은 법률의 입법목적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법

률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규정이므로 일반적으로 목적규정 다음에 두나,²⁰⁾ 제정안과 같이 정의규정 다음에 두는 입법례도 있음.²¹⁾

제정안에 따른 통합국제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의 기본방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그 종전부지의 개발과 달리,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국토 균형발전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과 종전부지 개발의 기본방향을 첨단연구산업의 기능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제정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조문 비교(기본방향) >

제정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조(기본방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를 개발하여야 한다. 1. 군 공항의 이전과 민간공항의 신설을 포함한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 2. 활주로 관리 및 항공기 운항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공항의 신속한 건설 <u>3. 종전부지 개발을 통한 첨단연구산업의 기능이 활성화된 도시 조성</u>	제3조(기본방향)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신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를 개발하여야 한다. 1.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포함한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 2. 활주로 관리 및 항공기 운항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공항의 신속한 건설 <u>3.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 발전</u> <u>4. 종전부지 개발을 통한 관광·상업·산업 등의 기능이 활성화된 도시 조성</u>

20) 법제이론과 실제, 국회법제실, 2019. 258쪽.

21) 「철도산업기본법」

제4조(시책의 기본방향) ①국가는 철도산업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효율성과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화성시는 안 제3조와 관련하여 통합국제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갈등조정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화성시를 사업시행자로 명시한 것은 자치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임.

다음으로, 안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계획 수립(제2항)을 그 내용으로 함.

책무 규정은 보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규정됨.²²⁾

이에 따라 책무 규정에서는 주로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시행 의무,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 등 법의 전반적인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책무를 규정하는바,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경우 수원시·화성시와 정부(국토교통부, 국방부 등)가 상호 협력하여야 하는 사업이므로 이를 선언적으로 기술하여 강조하려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국가의 재원조달계획 수립은 민간공항에 한

22)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2019) p.270

정되며, 군 공항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어 국가가 수립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에도 동일한 논의를 거친 바 있으며, 민항이 이전하지 않는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재원조달계획 수립 주체에서 “국가”가 삭제되었다는 설명임.

그러나 제정안에 따른 사업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같이 수원 군 공항의 이전과 민간 국제공항의 건설이 함께 이루어지는 구조이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사례에 따른 경우 재원조달계획 등의 수립 주체로 국가도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수 있음.

**< 제정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조문 비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정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다른 계획과의 관계(안 제5조 및 제6조)

제 정 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 공항 이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에 따른다. ④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다.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 「항공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항공정책기본계획 4.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

안 제5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사업·공항개발사업에 관하여 제정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군공항이전법」,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기

술방식은 해당 법률이 다른 법률에 대하여 특별법 지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방식²³⁾임.

한편,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택지 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이와 달리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 이유는 현 수원 군 공항 부지를 활용하여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보임.

**< 제정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조문 비교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정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23)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2019) p.274

제정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 공항 이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 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에 따른다. ④ <u>중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다.</u>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 공항 이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 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에 따른다. ④ <u>중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안 제5조제2항은 “제정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 공항 이전사업에 관하여 「군공항이전법」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정법률이 「군공항이전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다만, 안 제5조와 관련하여 화성시는 안 제8조²⁴⁾에서 중전부지 지차

제의 장이 군 공항 이전사업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주체가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한 「군공항이전법」 제9조²⁵⁾와 다르게 규정된 것으로서 서로 모순·저촉되는바, 이 경우 안 제5조에 따라 동 제정안에 따른 법률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어 「군공항이전법」이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국방부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군공항이전법」 상 “종전부지 처리 사전협의” 원칙과 “종전부지 가치향상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군공항이전법」에 따르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안 제6조에서는 제정법률에 따른 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24) 안 제8조(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등) ①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은 종전 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수원시장과 화성시장의 공동으로 시행하고,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로 협의하여 군 공항 이전 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25)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①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제55조(양여)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① 제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이전 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국방·군사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유지 또는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다.

제3조(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마. 그 밖에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우선한다고 규정하되,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²⁶⁾,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정책기본계획,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²⁷⁾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해당 계획들을 존중하고 있음.

공항 분야의 경우 국토종합계획-국가기간교통망계획-항공정책기본계획-공항개발종합계획-공항별 개발 기본계획-실시계획 순으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므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개발계획도 이러한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항공정책기본계획,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²⁸⁾

26)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① 이 법에서 “국토계획”이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② 국토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

1. 국토종합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27) 제3조(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제16조(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보호구역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방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관할부대의 보호구역등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은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임.

**< 제정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조문 비교
(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정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 「항공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항공정책기본계획 4.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 「항공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항공정책기본계획 4.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

화성시는 안 제6조에 대하여 특별법에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과 달리 협의 절차에 관한 사항, 협의 내용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할 재량적 판단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사례의 경우 이미 부지가 선정되어 있고,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어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우선하는 것이 가능하나,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은 이전 부지 선정 및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 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제로 공항 개발사업 시행에 착수하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임.

참고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는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등 지자체 제안은 지자체간 협의 상황 등 제반 추진여건을 종합고려 후 추가검토”라고 명시하고 있음.

라.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의 시행 등(안 제7조)

제 정 안
제7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의 시행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2.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사업 3. 공항과 연계되는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 ②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가액을 뺀 금액은 국가에 귀속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의 생계지원,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기도지사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주변지역을 다음 각 호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2.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특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기부재산을 초과하는 양여재산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행가능한
사업의 범위 및 잔여 차액의 처리(안 제7조제1항·제2항)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²⁹⁾은 기부재산을 초과하는 양여재산의 차액은 세입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현재 「군공항이전법」에 따르면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양여재산, 종전 군 공항 부지)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공항(기부재산)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³⁰⁾하고 있어 기부재산을 초과하는 양여재산의 차액의 범위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9)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기획재정부 훈령)

제4조(사업대상) ② 제1항에 따른 양여재산은 최초 합의각서 체결 시점에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이어야 한다. 다만, 대체시설 완공후 최종 합의각서 체결시 양여재산이 기부재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주관기관에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즉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30)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①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제55조(양여)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 공항 이전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다.

1.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2. 이전부지의 군 공항시설 설치계획

⑤ 이전사업에 필요한 계획수립, 사업시행 등 이전사업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또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에는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규정하여 「군공항이전법」과 큰 차이는 없으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강행규정(“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으로 규정³¹⁾하고 있음.

그리고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방식 및 절차에 대하여 「군공항이전법」에 따르도록 규정³²⁾하고 있음.

결국 양 법률에 따르면 기부재산을 초과하는 양여재산의 차액의 범위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남는 차액이 있는 경우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에 따라 세입조치되는 것으로 보임.

반면, 안 제7조제1항은 기부재산을 초과하는 양여재산의 차액의 범위에서 ①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외에 ②공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사

3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경우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2)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따른다.

업과 ③공항 연계교통망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있고, 안 제7조제2항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가액을 뺀 금액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도심권에 위치한 수원 군 공항 부지(양여재산)의 경제적 가치가 높을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통해 민간 국제공항 건설사업 및 공항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국가 재정부담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에서 차액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명시하여 차액의 국고 귀속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양여재산과 기부재산의 차액으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외에 별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기부대양여 원칙과 상충하며, 수원 군 공항 이전에 한하여 잔여재산을 공항과 연계된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사용할 경우 다른 지자체와 형평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공항개발사업이나 철도·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기부대양여사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필요 시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별도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아울러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군공항이전법」에서는 지원사업 시행 여부를 의무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으로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다음으로 국방부는 안 제7조제1항은 각 호의 사업을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³³⁾, 즉 공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사업과 공항과 연계되는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민간공항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안 제8조³⁴⁾에 따라 정해지는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그 허가를 받은 자)가 시행할 사업이며,

차액을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외에도 군 공항 이전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타 부처 소관사업(제1항제2호, 제3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부대양여 원칙에 예외를 두는 것이므로 법체계 간의 상충, 타 군 공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우려되는바,

33) 제정안 제7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의 시행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생략)

2.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사업

3. 공항과 연계되는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

34) 제정안 제8조(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등) ①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수원시장과 화성시장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로 협의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³⁵⁾과 같이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방식 및 절차는 「군공항이전법」을 따르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② 이전주변지역의 특별구역 지정 (안 제7조제5항)

안 제7조제5항의 경우 이전주변지역을 관광특구, 특별건축구역 등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경기남부통합 국제공항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군 공항이 이전되는 지역의 피해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참고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이전주변지역이 아닌 종전부지에 대하여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안 제11조에서 이전주변지역 10킬로미터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별도 기 지정하고 있는 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유사 법률에서는 이전주변 지역이 아닌 종전부지 주변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5)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따른다.

또한,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이 과도하게 개발된다면 소음 피해 해소라는 군 공항 이전 취지와 상충할 우려가 있고, 타 군 공항과의 형평성 논란 소지도 있다는 의견이며,

만일 해당 조항대로 제정되어 이전주변지역을 제5항제1호부터 제6호의 용도로 개발한다면 신규 군 공항의 작전 및 운영에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별구역 지정 전에 국방부장관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적으로 관광특구 지정권자는 광역단체장이나, 수원시는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의 장으로, 비록 특별법 상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법 해석상 혼선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제정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조문 비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의 시행 등) >**

제정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의 시행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	제7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의 시행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

제정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2. 「<u>공항시설법</u>」에 따른 <u>공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사업</u> 3. <u>공항과 연계되는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u> ② <u>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가액을 뺀 금액은 국가에 귀속된다.</u>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의 생계지원,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기도지사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u>이전주변지역</u>을 다음 각 호의 특	위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경우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의 생계지원,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u>중전부지</u>의 특별구역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법률이 정하

제정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2.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특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는 바에 따라 중전부지를 다음 각 호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2.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특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중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마.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등(안 제8조)

제 정 안
제8조(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등) ①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수원시장과 화성시장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로 협의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 상호 간에 군 공항 이전사업에 관하여 이견이 있으면 경기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④ 경기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조정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안 제8조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경우 수원 군 공항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³⁶⁾의 장인 수원시장과 화성시장을 공동 사업시행자로 하고, 민간 공항 개발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사업시행자로 하려는 것임.

이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경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³⁷⁾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자로 할 수 있도록 하고

36)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란 군 공항이 위치한 경기도 수원시와 경기도 화성시를 말한다.

37)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1. 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
2.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3.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

있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을,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공항시설법」 제6조38)에서 원칙적으로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구 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수원시는 기존 「군공항이전법」에 따른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수원시장이나, 수원시장과 이전부지 지자체 장이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명시하여 이전지역에 대한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고, 상호 협의적 관계 조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마. 그 밖에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8) 「공항시설법」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의 개량 등에 관한 개발사업 중 일상적인 유지·보수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2. 해당 개발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해당 개발사업과 관계된 토지 및 시설(공항의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한편, 화성시는 안 제8조³⁹⁾에서 종전부지 지차제의 장이 군 공항 이전사업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주체가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한 「군공항이전법」 제9조⁴⁰⁾와 다르게 규정된 것으로서 서로 모순·저촉되는바, 이 경우 안 제5조에 따라 동 제정안에 따른 법률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어 「군공항이전법」이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국방부는 이에 대하여 복수의 주체가 공동시행자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절차 전반에 있어서 사업추진에 상당한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할 우려가 있으며, 화성시는 이전건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전건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화성시장을 종전부지 지차체장·사업시행자로 지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군공항이전법」의 절차에 따라 정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9) 안 제8조(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등) ①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수원시장과 화성시장의 공동으로 시행하고,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로 협의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40)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①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제55조(양여)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① 제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국방·군사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유지 또는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다.

제3조(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마. 그 밖에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반면, 「군공항 이전법」의 절차에 따라 종전부지 지자체를 수원시로 한정하는 경우, 탄약고가 위치한 종전부지인 화성시가 배제되는 측면이 있음. 그리고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화성시장은 첨단연구산업단지 지정 신청 주체⁴¹⁾이자 첨단연구산업단지위원회의 위원⁴²⁾으로서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의 주체이므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조문 비교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정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등) ①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u>수원시장과 화성시장</u> 이 <u>공동으로 시행</u> 하고,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로 협의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을 대행할 사	제8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 이전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41)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00158호,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제8조(첨단연구산업단지의 지정) ① 지원처장은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수원시장 및 화성시장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첨단연구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42)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00158호,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제15조(첨단연구산업단지위원회) ① 첨단연구산업의 육성 및 보호,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개발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첨단연구산업단지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첨단연구산업의 육성·보호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조성·지정·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첨단연구산업의 육성 및 보호,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개발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5. 화성시장

제정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업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u>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 상호 간에 군 공항 이전사업에 관하여 이견이 있으면 경기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u> ④ <u>경기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조정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u>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안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달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인 수원시장과 화성시장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경기도지사가 신청을 받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기도지사의 조정 결정을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광역자치단체장인 대구광역시 시장이 군 공항 이전사업의 단독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과 달리 제정안에 따르면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인 수원시장과 화성시장이 공동 사업시행자가 되어 이견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에 곤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화성시에 따르면 수원시장의 신청을 받아 경기도지사가 조정을 하게 되는 경우 화성시에서 공식적으로 경기도지사에게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법적으로 주어져 있지 아니하며, 그러한 조정의 신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적시에 고지 받을 기회 또한 제대로 부여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기회들의 부여는 전적으로 경기도지사의 재량에 달려있는바,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등을 위배하여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임.

한편,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로 수원시장과 이전부지 지자체의 장을 명시함과 동시에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수원시장과 이전부지 지자체의 장이 동등한 입장에서 경기도지사에게 이견 신청을 하도록 수정하여 상호 평등 원칙이 확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바.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및 인가·허가 등의 의제
(안 제9조 및 제10조)

제 정 안
제9조(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승인·고시에 관한 절차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다. ② 제8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항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의 수립·승인·고시에 관한 절차는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다.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 시설사업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으로 본다. 제10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국방부장관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해제·결정·동의 및 계획의 수립·변경 등(이하 “인가·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호에 대해서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한정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협의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제 정 안

-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7.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0.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12.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4.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5.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6.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9.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2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면허·협약·동의·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조

제 정 안

- 제3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와의 협의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및 점용·사용 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과의 협의 또는 매립면허관청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13.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5.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신고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제 정 안

-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19.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2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22.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4.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또는 협의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행위에 관한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신고
 2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점용허가의 고시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가·허가등 및 인·허가등 의제의 효력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은 각각 군 공항 이전사업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승인·고시와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승인·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⁴³⁾은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공항시설법」⁴⁴⁾은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을

4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3. (생략)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1. (생략)

③ 국방부장관은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사업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고시·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고시·통보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각 호의 인가·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1. (생략)

④ 국방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고시·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고시·통보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계획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4) 「공항시설법」

제7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① 제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는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할 때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1항제1호·제2호(「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만 해당한다) 또는 제12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

시작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9조도 이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그 절차는 각 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안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이 공유수면 매립을 포함하는 경우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안 제10조제1항제1호에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공유수면매립 면허 및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고, 안 제10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가·허가등 및 인·허가등 의제의 효력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⁴⁵⁾은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

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 ⑧ 제7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을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실시계획이 변경되어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45) 「행정기본법」

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수정은 불필요한 측면도 있음.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⁴⁶⁾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 건설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46)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공항의 건설사업

9. ~ 15. (생략)

16.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7·18. (생략)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 공항시설법 」 제2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공항 또는 「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육상비행장의 신설 2)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의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 개발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공항시설법 」 제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전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가.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사업면적이 3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같은 법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골프장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제6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 나)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제6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함께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절차로, 신공항 건설사업 또는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이에 안 제9조제3항은 군 공항 이전사업 및 공항개발사업 등 통합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환경부는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47)에 따를 때 공항 및 국방·군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수립 전에

47)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8.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16.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유사 입법체인 「대국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별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안 제10조는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인·허가 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인·허가 의제란 하나의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허가, 인가, 특허, 신고, 등록, 지정 등 관련되는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임.

안 제10조제1항 각 호의 인·허가 의제대상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48)와, 안 제2항 각 호의 인·허가 의제 대상은

48)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인가·허가등의 의제) ① 국방부장관이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해제·결정·동의 및 계획의 수립·변경 등(이하 “인가·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6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호의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 전용의 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협의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8.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10.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공항시설법」 제8조와 대체로 유사하며, 안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인·허가 의제대상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동일함.

참고로, 안 제10조제1항 각 호의 인·허가 의제대상에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2호에 따른 의제대상인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 제외되었으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인·허가의제 대상이 아닌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가 추가되었음.

또한, 안 제10조제2항 각 호의 인·허가 의제대상에는 「공항시설법」 제8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의제대상인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관리의 허가 또는 신고

-
11.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2.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3.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4.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5.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3.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와 동항 제29호에 따른 의제대상인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이 제외되었으며, 「공항시설법」 제8조에 따른 의제대상이 아닌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와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지정의 해제가 추가되었음.

안 제10조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인허가 의제 제도는 주된 사업의 실무상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특례로, 개별 법률의 법률상 권한과 업무의 변경을 동반하기 때문에 개별 법률의 실체적 요건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⁴⁹⁾에서 주된 인허가 전에 관련 인·허가 관련 행정청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도시공원 점용허가가 가능하고, 도시공원 부지에 공항시설을 계획하여 설치하는 경우 공항시설 특성 및 이용 목적 상 기존 도시공원은 기능 유지가 곤란하므로 안 제10조제2항제11호에 규정되어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의

49)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현재 산업단지는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국토개발계획, 산업입지수급계획 등에 따라 조성 중이며,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위해 타 법령의 제를 통한 산업단지 개발은 부적합하므로 안 제10조제2항제17호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의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도시교통문제를 사전에 관리하여 미래 교통혼잡에 대비함으로써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국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안 제10조제2항 제12호의 교통영향평가서 제출 및 검토를 의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초지를 전용하려면 「초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방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으로 초지를 전용하는 것은 「초지법」과 상충되므로 안 제10조제1항제19호 및 제2항제2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지전용 허가 등에 대하여 의제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다만, 이와 같은 환경부,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과 관련하여 안 제10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의 효력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⁵⁰⁾은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점과

초지전용의 허가·신고·협의, 도시공원 점용 허가, 교통영향평가서 제출 및 검토, 산업단지 개발 등의 내용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⁵⁰⁾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국방부장관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해제·결정·동의 및 계획의 수립·변경 등(이하 “인가·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호에 대해서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한정한다.

19.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면허·협의·동의·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 허가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또는 협의

안 제10조제3항은 인·허가등 의제의 효력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본법」 제24조⁵¹⁾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협의 요청에 대하여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

51)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출하도록 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협의의 의제를 위하여 협의 요청 시 20일 이내에⁵²⁾ 의견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⁵³⁾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해당 조항에서는 해당 절차를 이행하고 의견을 통보하는 기한을 30일로 정하고 있고, 협의절차별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30일은 해당 부대의 내실있는 검토를 위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기간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의견제출기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참고로,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 후단은 전단에서 정한 기간인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면서도,

52) **안 제10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면허·협의·동의·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53)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2016. 1. 19., 2019. 8. 27.>

1. ~ 13. (생략)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등을 하려는 때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1·2. (생략)

④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제15조에 따른 소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그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협의 간주에 요구되는 기간에 대하여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⁵⁴⁾.

54)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사.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안 제12조 및 제13조)

제 정 안
제11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예정지역 2.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1조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정 지역 경계의 10킬로미터 범위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하고 주변 지역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과거 인천국제공항 개발 당시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⁵⁵⁾을 통해 영종도 일대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해 개발한 사례가 있는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이를 참조하여 규정하였음.

55)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법률 제13433호, 2015.7.24., 타법개정]

제16조의2(주변지역개발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이하 "주변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의 범위 및 지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 및 무의동 일원과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시도리·모도리 및 장봉리 일원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주변지역개발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신공항 건설에 따른 어업권·양식업권 등의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등에 관해 규정하였는데, 동법의 경우에 군 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건설된다는 점에서 범위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달리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를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예정지역과 공항·비행장 개발예정지역’의 경계를 기준으로 규정하였음.

제정안의 경우에도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이 군 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신설되므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 제정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조문 비교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등) >**

제정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제11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제정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예정지역 2.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 필요한 경우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예정지역 2.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 통합국제공항건설추진단 및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
(안 제12조 및 제13조)

제 정 안
제12조(통합국제공항건설추진단) ①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통합국제공항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법인·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 ①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2조는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추진·관리를 위한 통합국제공항건설추진단 구성·운영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고, 안 제13조는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의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하는 것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3조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조문 비교
(통합국제공항건설추진단 ·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 >**

제정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2조(통합국제공항건설추진단) ①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통합국제공항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법인·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 ①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법인·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 ①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통합국제공항건설추진단’과 같은 하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의 합리적·통일적

운영을 위해 대통령령(직제)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 법률에 정부조직에 관한 사항인 ‘통합국제공항건설추진단’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임.

다만,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⁵⁶⁾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⁵⁷⁾과 같이 별도의 추진단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별법에 그 근거를 규정한 입법례도 존재함.

통합국제공항건설추진단의 설립 근거를 개별법에 해당하는 동 제정 법률에 규정할지 또는 행정안전부의 의견과 같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여 그 근거를 둘 것인지 여부는 법령 체계 및 사업추진을 위한 별도 정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화성시는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군공항의 이전을 건의할지

56)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신공항 건립추진단) ①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공항 건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법인·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7)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2조(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법인·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부, 군공항의 이전 유치를 신청할지 여부 등에 관한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임에도, 화성시 의사와 무관하게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 및 통합국제공항 사업의 추진 주체로 국토교통부에 추진단을 두도록 하는 것은 화성시가 스스로 처리해야 할 자치사무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안 제8조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주체로 종전부지 지자체의 장, 즉 수원시장과 화성시장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자. 정부의 재정 지원(안 제14조)

제 정 안
제14조(정부의 재정 지원) 국가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안 제14조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항시설법」 제23조⁵⁸⁾와 유사함.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 이전사업과 민간공항 건설사업으로 나뉨. 그런데 군 공항 이전사업의 경우 안 제7조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정부 보조나 융자가 별도로 투입될 여지는 적다고 보이므로 동 규정의 실질적 효과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중 민간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보임.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사업비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군 공항 이전에 대하여도 재정지원을 규정(제

58) 「공항시설법」

제23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착륙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20조제2항)하고 있으나, 제정안의 경우 이러한 조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수원 군 공항의 경우 도심에 위치함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때 별도의 재정지원이 불필요함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제정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조문 비교
(정부의 재정 지원) >**

제정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정부의 재정 지원) 국가는 통합 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0조(정부의 재정 지원) ① 국가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규모·절차 및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안 제14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은 비용 보조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으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달리 제정안에는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어 비용 보조에 군 공항 이전사업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시행되므로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용자는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에도 “국가의 비용 보조·용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구 군 공항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시행되므로 국방부는 군 공항에 대한 비용 보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임.

차. 부담금의 감면 등(안 제15조)

제 정 안
제15조(부담금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 제15조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 이러한 규정은 주로 지원법적 성격을 가진 법률에 두는 경향⁵⁹⁾이 있으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와 유사한 규정임.

< 제정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조문 비교 (부담금의 감면 등) >

제정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부담금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업시	제21조(부담금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정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 제15조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농지법령(시행령 제52조 및 [별표2])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개별법령에 부담금 감면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법 시행령」 제52조의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부담금이 감면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오해 및 제도 운영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농지법의 입법취지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 관리·보전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관련 감면조항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또한, 대체초지조성비 감면은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타 법령에서 부담금 감면을 규정하는 것은 초지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고, 개별법령에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초지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른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감면되지 않으므로 국민의 불필요한 오해 및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다음으로, 국토교통부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시행자는 부담금 감면대상이 될 수 없으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하더라도 교통혼잡 유발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고, 주변 도시 및 시설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개발부담금은 적정한 개발이익의 환수 및 배분이라는 정책실현 목적과 준조세적인 부담금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바, 필요 최소한으로 감면대상을 한정하고 형평성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감면대상에서 개발부담금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생태계보전부

담금 감면 또는 제외규정 신설 시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타 법령에서 그 감면 또는 제외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원칙과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또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정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자동차는 그 성격상 수원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지역 외에도 광범위한 지역을 운행하며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이 사업 시행과 직접 연계가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에 대하여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이러한 의견들과 관련하여 「군공항이전법」⁶⁰⁾은 농지보전부담금,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⁶¹⁾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

60)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부담금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전사업 시행자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 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6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⁶²⁾은 각 부처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의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62)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부담금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카. 민간자본 유치 등(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 정 안
제16조(민간자본 유치)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제17조(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지역기업의 우대)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제정안은 제16조에서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민간투자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도로, 철도 등 경제활동기반시설, 유치원, 학교 등 사회서비스제공시설,

공공청사, 보훈시설 등 공공용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한편, 안 제17조는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자유치사업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지원법적 성격의 법률에서 발견됨.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의 증대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로 공공재의 공급을 공공부문이 전담하기 어려운 경우 민간자본 유치를 통하여 공공재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할 수 있으며, 제정안도 원활한 자금조달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참고로,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화물터미널 등 일부 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구축하였음.

【 인천공항시설 민간투자사업 현황 】

사업명	구분		사 업 시행자	사업규모 (연면적㎡)	사업비 (억원)	사업 시행방식	무상 사용기간	공사기간
화물 터미널	A	대한항공 1터미널	(주)대한항공	73,651	805	BTO	20년 ('22.6.)	'98.5.~ '00.10.
	-	대한항공 2터미널	(주)대한항공	37,466	438	"	19년 ('26.7.)	'05.5.~ '07.6.
	B	아시아나 항공터미널	아시아나공항 개발(주)	70,509	556	"	20년 ('23.3.)	'98.5.~ '00.10.
	C	외항사 터미널	인천공항외항사 터미널(주)	76,068	564	"	12년 ('13.10.)	"
	D	위험물 터미널	아시아나공항 개발(주)	2,133	14	"	12년 ('13.8.)	"
항공화물 창고			인천항공 화물터미널(주)	15,842	180	"	20년 ('21.3.)	'99.10.~ '00.12.
GSE 정비시설	A	한국공항	한국공항(주)	9,822	118	"	20년 ('21.3.)	'99.7.~ '00.10.
	B	아시아나 지원시설	씨지에이치 유동화전문(유)	2,351	39	"	20년 ('21.3.)	"
기내식 시설	A	대한항공	(주)대한항공	34,636	426	"	20년 ('21.7.)	'99.5.~ '00.11.
	B	LSG KOREA	씨지에이치 유동화전문(유)	19,297	273	"	20년 ('21.7.)	"
항공기 정비시설	A	대한항공	(주)대한항공	39,696	602	"	30년 ('32.6.)	'00.3.~ '02.6.
	B	아시아나 항공	씨지에이치 유동화전문(유)	20,790	382	"	30년 ('32.1.)	'00.3.~ '01.11.
항공유 급유시설			인천국제공항급 유시설(주)	4,250	1,038	"	11년 ('12.8.)	'97.5.~ '01.3.
열병합발전소			인천공항에너지 (주)	69,616	1,915	"	30년 ('31.3.)	'97.5.~ '01.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이러한 민간자본의 유치 및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문을 규정하고 있는데, 민간자본 유치의 주체를 살펴보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와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음.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민간자본 유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제17조(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에서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민간자본 유치)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제23조(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정안의 경우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유사하게 군 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건설되는 점을 고려하여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를 그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시행자는 수원시장·화성시장(군 공항 이전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공항개발사업)임.

다음으로, 안 제18조는 사업시행자가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신공항 건설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9조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동계약운용요령」⁶³⁾에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에 본점 소재지가 소재한 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제도가 이미 현행 법령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나, 제정안에 지역

6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① ~ ② (생략)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 2.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 ⑥ (생략)

⑦ 제6항제2호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는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기업의 우대를 규정하는 경우 그 근거가 명확해지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에도 지역기업의 우대를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의 경우 주로 군 공항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같은 기피시설이 설치되거나 이전되는 경우, 생활근거지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⁶⁴⁾으로 보임.

제정안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군 공항을 포함하여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생활 근거지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음.

64)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처분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유치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이전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및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1조의5(예정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예정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참고로, 군 공항과 무관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제정안과 같이 이를 규정하고 있음.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지역기업의 우대)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26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타. 특례(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 정 안
제20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를 따른다.
제22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는 각종 특례 사항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상의 각종 특례와 유사하나,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 제정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조문 비교(특례) >

제정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	제27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

제정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를 따른다. 제22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8조(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를 따른다. 제29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먼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별표3]에서는 체육시설 설치 및 부지면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시설 기준 등)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시설물 설치 및 부지 면적의 제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체육시설업 시설물 설치 및 부지 면적의 제한 사항(제8조 관련)

1. 시설물 설치의 제한 사항

골프장 안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물(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 가. 골프장사업계획지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역은 제외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자연보전권역(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지역은 제외한다)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이 아닐 것
-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역은 그 취수지점의 상류방향의 경우 각각 유하거리 7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된다.

- 1) 골프장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2) 일반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3) 취수지점(공중이 이용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 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예정부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녹지를 보전하도록 협의된 지역이 아닐 것(사업계획승인 당시 숙박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골프장만 해당한다)

2. 부지면적의 제한 사항

업종	제한내용
가. 자동차경주장업	자동차경주장의 부지면적은 트랙면적과 안전지대면적을 합한 면적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골프연습장업(실외 골프연습장업만 해당한다)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은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골프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골프코스 1홀마다 1만3천 제곱미터를 추가할 수 있고, 피칭 및 퍼팅 연습용 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추가할 수 있다.
다. 썰매장업	썰매장의 부지면적은 슬로프면적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안 제20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지 면적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골프장 내 숙박시설, 골프연습장, 자동차경주장, 썰매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이 건설되는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와 같이 부지면적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한 유사 사례로는 인천국제공항 개발지역에 골프장을 설치한 사례가 있음.

다음으로, 안 제21조는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로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기존 일반단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⁶⁵⁾ 산업단지 전환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현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6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산업단지의 전환)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준공 후 경과년도나 유치업종 변경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국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의 전환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종류의 전환(이하 “산업단지전환”이라 한다)은 전환된 산업단지와 잔여 산업단지(기존 산업단지의 일부 지역을 산업단지전환하는 경우 남은 산업단지를 말한다)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종전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거나 종전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고시일에 산업단지가 전환된 것으로 보며, 제3항에 따라 새로 수립된 실시계획은 전환 전의 실시계획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단지전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를」로도 산업단지 전환이 가능한바 실효성이 없어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다만, 동 규정 신설 이후 제정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도 같은 특례가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안 제22조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⁶⁶⁾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의 경우 민간공항 건설 시 사전타당성조사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함.

66)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초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율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중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⁶⁷⁾를 말하며, 경제성 분석·정책성 분석·지역균형발전 분석과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짐.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⁶⁸⁾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조 제2항⁶⁹⁾에서는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67)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한다.

68)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6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다만, 이 경우에도 같은 조 제5항⁷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결국 안 제22조는 이러한 「국가재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예산낭비 방지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운영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9조⁷¹⁾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에 따른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의 경우 군 공항 이전과 함께 신설된다는 점에서 군 공항과 활주로를 공유하여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원시에서 추진한 관련 연구용역에 따르면 경기남부 국제공항 설립 시 사업성(비용 대비 편익, B/C)이 2 이상일

70)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7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것으로 분석된바,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통과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임.

【 경기남부 국제공항 설립 시 경제적 타당성 】

용역명	경기남부 국제공항 항공수요 분석용역	경기남부 민간공항 개발계획 수립용역
항공수요 예측 (여객·화물/연)	874만명·121천톤/연	951만명·131천톤/연
민간공항 추가 사업비	3,515억원	4,151억원
사업성(B/C)	2.043	2.002 ※ 민간공항 독립 신설시 B/C 0.945
기간	2021. 4.~10.	2022. 3.~9.

※ 자료 : ‘경기남부 국제공항 항공수요 분석용역 보고서’(2021.10.) 및 ‘경기남부 민간공항 개발계획 수립용역 보고서(2022.09.)’ 재구성

즉, 제정안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규정한 취지는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한 측면보다는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일련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함에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개별법에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조사 규정과 상이하거나 유사·중복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 사업 등을 개별 법률로써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경우, 타 분야로의 확산 가능성 등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형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파. 보칙(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제 정 안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에게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군 공항 이전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30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결과 공사를 끝낸 시설이 실시계획 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 3.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26조(허가 등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제 정 안

고 인정되는 경우

5. 제25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제26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승인의 효력 정지 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먼저, 안 제23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효율적인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권한의 위임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위임대상에 있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소속 기관의 장, 관계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있는 반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있음.

이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주도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와 같이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의 경우에도 수원시장과 화성시장의 역할이 주요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위임대상을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 관계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안 제24조는 통상적인 감독 규정으로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군 공항 이전 사업은 제외) 시행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 출입을 통한 업무검사 등을 규정하는 조항임.

이는 행정조사에 대해 규정한 것인데, 행정조사의 구체적인 조사절차 등은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르더라도 조사의 주체, 조사목적 및 조사대상 등을 포함한 실시근거는 개별법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레이므로, 이에 따른 것으로 보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21조(출입·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32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에게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군 공항 이전 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8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제정안은 제25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군 공항 이전 사업은 제외)의 시행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승인된 실시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음.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결과 공사를 끝낸 시설이 실시계획 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
3.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결과 공사를 끝낸 시설이 실시계획 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
3.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음, 안 제26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경기도
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군 공항 이전 사업은 제외)의 시행자가 거짓
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
은 경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
하여는 승인 등⁷²⁾을 취소하거나 효력 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사업시행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법에 따른 승인을 취
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등을 명하여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
기 위한 것으로 보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3조(허가 등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제10조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신공항건설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5. 제22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⁷²⁾ 안 제8조(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
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 제9조(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② 제8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항개발사업
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의 수립·승인·고시에 관한 절차는 「공항시설
법」 제7조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4조(허가 등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3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안 제27조에서는 과징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바, 과징금 제도란 ①행정상 의무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거나 ②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상의 제재를 일컫는데⁷³⁾, 제정안에 따른 과징금은 안 제26조에 따른 승인 취소 등이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후자 성격의 과징금임.

73) 법제이론과 실제, 국회사무처, 2019, p.422

이는 공항의 기반시설로서의 공공성과 「공항시설법」 제59조(과징금의 부과)⁷⁴⁾를 고려할 때, 규정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4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게 제23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승인의 효력 정지 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5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제34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승인의 효력 정지 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74) 「공항시설법」

제59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항행안전시설설치자에게 제4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항운영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거나 제58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승인의 효력 정지,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마지막으로, 안 제28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안 제26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불이익한 처분 전에 처분 당사자에게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보임.

「행정절차법」 제22조⁷⁵⁾에서도 인허가 등의 취소를 하는 경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청문 규정을 두고 있음.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75)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하. 벌칙(안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 정 안
제29조(명령 등의 위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자 제30조(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한 자 2.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4. 제2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시설을 사용한 자 제31조(업무방해 죄)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및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제지·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이 경우 범칙행위 처리에 관한 절차는 「공항시설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를 따른다.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제29조부터 제32조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안의 내용 중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공항시설법」 상의 벌칙 규정을 준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해석상 논란을 피하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법에 서 별도로 벌칙 적용에 관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공항시설법」 제65조(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66조(명령 등의 위반 죄), 제67조(업무방해 죄), 제67조의2(제지·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⁷⁶⁾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제정법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76) 「공항시설법」

제65조(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0조제7항 또는 제45조제5항(제5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한 자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5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시설을 사용한 자

제66조(명령 등의 위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제5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3. 제25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7조 및 제58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자

제67조(업무방해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55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및 기피한 자

제67조의2(제지·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에도 「공항시설법」을 고려하여 벌칙 대상과 그 수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정안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공항시설법」 제68조(양벌규정)⁷⁷⁾와 같이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규정된 위반한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바, 안 제33조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6조(명령 등의 위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자

⁷⁷⁾ 「공항시설법」

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및 제6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신공항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한 자
2.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4. 제23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시설을 사용한 자

제28조(업무방해 죄) 제21조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및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제지·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이 경우 범칙행위 처리에 관한 절차는 「공항시설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명령 등의 위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자

제38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한 자
2.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4. 제34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시설을 사용한 자

제39조(업무방해 죄)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및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제지·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이 경우 범칙행위 처리에 관한 절차는 「공항시설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를 따른다.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의 처

02)6788-5580

참고1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요건(「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요건(제5조제1항 관련)

구분	선정 요건
군사 작전 적합성	1. 군 공항을 이전하기 전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항공작전운용이 가능할 것 2. 전방위 항공작전 수행이 가능하며 균형적인 전력 배치가 가능할 것 3.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비행기준·절차·방식 등의 준수가 가능할 것 4. 다른 공항의 공역(空域)과 중복되지 않을 것. 다만, 공역이 중복되더라도 관계 기관과 공동사용에 관한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의 적용이 용이하고, 장애물로 인하여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을 것 6. 바람, 안개, 강우 등 계절별 기상조건이 군사작전 수행 및 비행안전에 적합할 것
공항입지 적합성	1. 소음피해 인구수와 소음보상 및 소음대책사업 등에 따른 비용이 감소될 수 있을 것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거나 해제·변경이 가능할 것 3. 시공성·토공량(土工量) 등을 고려하여 지형이 공항입지로 적합할 것 4. 전력, 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의 공급이 용이할 것 5. 철도, 도로, 항만 등과 연결이 용이할 것 6.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등의 보존이 가능할 것 7. 향후 군 공항의 확장이 가능할 것